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108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피고(선정당사자)B

변론 종결 2021. 10. 20.

판결 선고 2021. 12. 8.

주 문

1. 소외 C와 선정자 D 사이에 체결된 12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을, 소외 C와 피고(선정당사자) B 사이에 체결된 5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을, 소외 C와 선정자 E 사이에 체결된 9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선정자 D는 105,0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 B은 40,000,000원, 선정자 E은 8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은 2006. 3. 30. 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은 위 문서의 하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1/2에 대하여 남편 G에게 택지보상 즉시 증여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2) F과 G은 2012. 4. 6. 협의이혼하였는데, G은 2014. 3. 25. 원고와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2. 10. 수용을 원인으로 2015. 3. 20. H주식회사('주식회사' 생략, 이하 같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은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746,922,800원을 공탁하였고, 위와 같이 공탁된 수용보상금 및 그 이자의 합계 747,459,481원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H로부터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에 따라 H이 79,212,600원을 배당받고, 그 외 조합이 292,797,506원을, C이 잔존금액 375,438,725원을 각 배당받았다.

3) C은 2015. 5. 28. 선정자 D에게 120,0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50,000,000원, 선정자 E에게 9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1).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 C,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8396), 위 소송은 2015. 2. 2. 대전지방법원 단독부로 이송되었으며,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되었다.

2) 위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는 원고의 G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의 F에

대한 대상청구권, F의 C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순차로 대위하여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 받은 수용보상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돈 즉 227,330,987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7,062,6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107568).

3)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15875), C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48179) 위 소송은 2017.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4호증, 을다 제1, 4, 5호증, 을바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은 2019. 5. 8.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위 불기소이유서에 '원고가 C 명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원고와 C 간의 채권·채무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인 2014. 11. 13.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및 C의 수용보상금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던 부동산이 수용되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C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1/2를 지급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즉,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원고의 C에 대한 227,062,64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2).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J은행에 대한 2020. 7. 3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K은행에 대한 2020. 8.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15. 5. 28.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은 J은행에 예금채권 205,716,원,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60,000원, L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376,400,768원 합계 376,966,484원이다.

2)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G의 대상청구권(이 당시 G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G의 대상청구권을 소극재산으로 한다) 227,330,987원이다3).

다. C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선정자 D에게 120,000,000원, 피고 B에게 50,000,000원, 선정자 E에게 9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를 통해 C의 적극재산은 116,966,484원(=376,966,484원 - 260,000,000원)이 되어 C의 소극재산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5. 28. 하루에 자신의 딸들인 선정자 D, E,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되어 받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송금하는 행위를 한 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선정자 D, E, 피고 B은 부녀관계이고, 평소에도 C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정자 D, E, 피고 B은 사해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D, E,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D, E, 피고 B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로써 취소되어야 하는 범위는 선정자 D 120,000,000원, 피고 B 50,000,000원, 선정자 E 90,000,000원이고, 이는 각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1. 10.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인 428,806,253원4) 보다 적은 금액이다.

다. 따라서 C과 선정자 D 사이에 체결된 12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5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 소외 C과 선정자 E 사이에 체결된 9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자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각 취소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선정자 D는 105,000,000원, 피고 B은 40,000,000원, 선정자 E은 8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박서우

판사송현섭

별지

1) 피고는 C의 선정자 D, 피고 B, 선정자 E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다투고 있지 않다.

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28.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은 F의 C에 대한 대상청구금액인 227,330,987원까지 포함된 454,661,975원이라고 주장하나, F은 C과 F 사이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F의 C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15. 5. 28. 당시 C의 소극재산은 G의 C에 대한 대상청구권 금액으로 한정한다.

4) 이 사건 관련판결 원리금 227,062,647원 + 이 사건 관련판결 원리금 227,062,647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21. 10. 21.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743,253원(=227,062,647원 × 2162일/365일 × 15%, 소수점이하 버림)